

"기획은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2. 3. 28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
과 장 : 박 신 철
사무관 : 김 경 남
전 화 : 500-2368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있음(1P)

이 자료는 2012년 3월 2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“수산물이력제” 확대

-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및 대상품목 확대 추진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◇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및 대상품목 확대 시행

- 참여업체 : (현재)1,321개 → ('12)1,450개(10%증가)
- 이력제등록품목 : (현재)18개 → 매년 1개씩 추가

◇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, 지원

□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및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□ 현재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는 총 1,321개로 금년에는 전년보다 10% 증가한 1,450개 업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. 아울러, 이력제 등록품목도 현재 18개(굴, 넙치, 김, 건미역, 멸치, 전복, 굴비, 갈치, 뱀장어, 오징어 등)에서 매년 1개씩 추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○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산물이력제 사업 전문위탁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관계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, 지원한다.

○ 또한, 참여업체에 대하여는 수산물이력제 라벨 인쇄 포장지, 이력조회기기, 제품 홍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.

□ 수산물이력정보 확인은 매장의 단말기 또는 인터넷(www.fishtrace.go.kr), ARS서비스,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산물 이력정보 확인할 수 있으며,

○ 또한 '11년에 QR코드(Quick Response,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격)를 개발하여 소비자가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장 즉석에서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
□ 수산물이력제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·관리하는 제도로 '08. 8월 처음 도입되었다

< 참고자료 >

수산물이력제 관련 제도

□ 근거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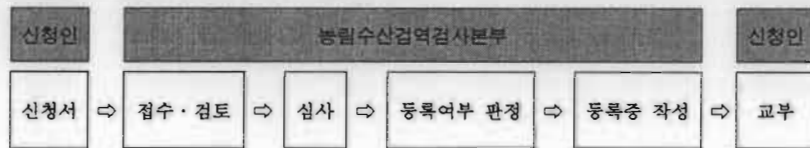
- 수산물품질관리법,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

□ 이력제 취지(법 제2조)

-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·관리하여
-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

□ 이력제 시행절차 및 단계

-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



-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단계별 등록사항

- 생산단계(단순가공 포함)
 - 품목명, 생산자 성명, 생산자 주소, 생산자 전화번호, 양식장 위치 또는 산지 위판장 주소(어획물)
- 유통단계
 - 유통업자 성명, 유통시설 명칭, 유통시설 소재지, 유통시설 전화번호
- 판매단계
 - 판매업자 성명, 판매처 명칭, 판매처 소재지, 판매처 전화번호

□ 이력제 어종 및 참여업체

- 이력제 어종 : 18개 품종(넙치, 미역, 다시마, 멸치, 바지락, 굴, 전복 등)
- 참여업체 수 : 1,321개 업체(생산 179, 가공 99, 유통 19, 판매 1,024)